

의안번호	2220288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6. 8. 6.
추계번호	26F38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
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권 양도 허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5조(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환급 및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권 양도 허용 - 적용대상: 당해 사업연도 및 이월된 미공제금액 - 적용요건: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 발생 - 재투자 의무: 환급액 전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·인력개발에 재투자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(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환급 및 양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및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를 신설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
- 국가전략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 - 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 - 환급형 세액공제의 경우, 납부세액 부족이나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발생한 미공제금액도 환급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 기간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미공제금액의 분포와 이월 미공제금액을 포함한 기업별 과세정보의 결합이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의 환급 및 환급 권리의 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등 의사결정 전반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또한,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, 환급권 양도 및 재투자 관련 세부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환급 대상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19,713	6,164	2,682
통합투자세액공제	14,699	223	59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